

1. 개정이유

유료도로법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 기본권 침해 최소화 등 부가통행료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서식 및 방법을 규정하고, 이의제기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알리는 사항 등을 규정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3.8.24. ~ 2023.10.2.)

2) 행정규제 : 해당사항 없음

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이의제기 방법 및 기한, 이의제기 기관

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제3항제4호의 이의제기 기한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제출하거나, 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(말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,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)
- ⑦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 (부가통행료의 부과·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·절차)	제8조의2 (부가통행료의 부과·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·절차)
① ~ ② (생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유료도로관리청,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항 각 호의 사항	1. ~ 3. (현행과 같음)
2.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	
3. 부가통행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	
4. <신 설>	4. <u>이의제기 방법 및 기한, 이의제기 기관</u>
④ ~ ⑤ (생략)	④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<신 설>	⑥ <u>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통행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제3항제4호의 이의제기 기한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제출하거나, 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(말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, 부가통</u>

<u>⑦ <신 설></u>	<u>행료를 부과한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의 사유 등을 기록하여 야 한다.)</u> <u>⑦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 여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알려야 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